開化期의 商人 服裝

南　　潤　　淑
全　　惠　　淑

〈目　次〉

Ⅰ. 序　論
Ⅱ. 韓國固有의 商人制度와 身分階級
1) 商賈
2) 客主(旅閣)
3) 居間
4) 典當舖
Ⅲ. 寫眞을 通해 본 開化期의 商人服裝
Ⅳ. 結論
圖　錄
參考文獻

Ⅰ. 序　論

服飾은 하나의 具象的文化로서 어느 文化보다도 生活意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新羅時代부터 朝鮮王朝에 이르기까지 中國服飾과 二重構造를 이루어 오던 韓國服飾이 오늘날에는 西洋服飾과 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西洋服飾과 最初로 접하게 되는 開化期는 時代上으로 보아 服飾史에 있어 매우 重要한 기점의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民族 固有衣服은 外來文物을 접하기 쉬운 上流層에 비해 庶民層에 의해 傳承維持되는 경향이다. 朝鮮王朝의 身分制度는 上流層인 兩班과 中人, 庶民層인 農·工·商에 종사하는 良人, 노예신분인 賤人階級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 良人에 속하는 商人은 그 종사하는 일의 性格上 새로운 문물을 流入하기가 용이하며, 傳統과 새로운 것이 만나는데에 부분적으로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政治, 經濟 및 社會體制가 급변하는 開化期(1876年~1910年)에 있어서 商人의 服裝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을 통한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풍물사진을 통하여 상인의 복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韓國 固有의 商人制度와 身分階級

朝鮮王朝의 身分社會는 兩班, 中人, 良人, 賤人의 네 階級으로 구성되었는데 身分에 따라 일상생활의 일정한 규격과 규정이 있음은 물론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역할과 納稅, 軍役등 국가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도 많은 차등을 두었으며 이것은 조선왕조의 支配體制의 중요한 支柱로 形成 維持되었다. 이중 商人은 良人계층으로 良人은 農, 工, 商에 종사하는 生産階級으로 百姓 常人등으로 불리어진 一般 庶民을 지칭한다. 朝鮮王朝는 土地經濟에 토대를 둔 自給自足的인 農業社會도 儒敎思想에 입각한 兩班層의 勞動忌避와 함께 生産階級 및 商工業을 賤業視한 관계로 商工業의 發達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産業의 침체로 生産力이 위축되고, 交通機關의 未發達

로 商去來는 한산하였으며 商業이 社會的으로 賤視되었던 풍조와 더불어 良人階級은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實學의 영향을 받은 開化期에 와서 農, 工, 商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었으나 朝鮮王朝 500年간을 지속시켜 온 신분계급에 대한 고정관념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이었다.

1. 商 賈

이는 賣買를 業으로 하는 商人으로 典型的이고 代表的인, 모든 商人中 그 비중이 가장 크며 座賈·行商이 있다.

座賈는 零細資本으로 경영하는 小規模의 小賣業者들을 말한다. 座商(坐商)에는 廛·房·假家의 區別이 있다. 「韓國總覽」에 의하면 「韓國에는 商店의 名稱에 三種이 있어 廛·房·假家가 이것이다. 廛이라 함은 大店의 意味이며, 房이라 함은 製造를 겸한 商店의 意義이다. 그리고 假家라 함은 廛의 작은 것을 말하며 官有地를 빌려 가지고 店을 벌여 놓던가 집 몸채를 빌려 가지고 덧붙여서 꾸민 店을 가리킨다」[1] 이와같이 廛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市廛, 즉 市街地의 商店으로 公廊 및 六矣廛이 있었다. 〈公廊〉은 官有建物로 座商에게 대여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하였는데 한때는 서울의 중심가에 자리잡아 盛況을 이루었었다. 〈六矣廛〉은 朝鮮朝에 가장 尤大한 特權을 가진 御用商店으로 여섯 가지 種類의 商品에 대한 特權이 있었으므로 六矣廛이라고도 하였는데 이외에 六住比廛, 六部廛, 六分廛, 六長廛, 六調備廛, 六主夫廛등의 名稱이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옷감, 종이, 고약, 어물등의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였다.[2] 六矣廛의 位置는 南大門에서 시작하여 水閣다리(現, 남대문로 3가)와 北倉洞 어귀를 지나 廣通橋에 이르며 各廛의 市井들과 顧客을 案內하는 '列立軍'들은 큰 장옷에 갓을 쓰고 소창옷에 汗衫을 단 衣服을 입고 사람을 불러 흥정을 하였다 한다.[3]

行商은 地方을 巡回하는 商業으로, 船舶을 利用하여 바다에서 하는 行商을 水商이라 하고, 陸路에서 하는 行商을 陸商이라 하는데 褓負商(또는 負褓商)은 여기에 속한다. 이는 褓商, 負商의 통칭으로 대개 褓商은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멜빵에 걸머지고 다니며 市場, 村家에 褓布를 끌러 펴놓고 販賣하였으므로 一名 봇짐장수라 하였고 상품은 대개 부피가 적고 高價인 雜貨, 즉 衣服·毛羽·骨物·革帶·紐·刀子·銃·櫛 冠具·綢緞·布木·鍮器·烟竹·金銀銅의 制品을 취급하였으며, 負商은 상품을 지게에 얹어 짊어지고 다니며 販賣하였으므로 一名 등짐장수라 하였고 상품은 비교적 粗雜한 日用品으로 木器, 煙草, 土器, 漁鹽, 陶磁器, 방망이, 홍두깨, 草席, 바가지, 草鞋등을 취급하였다. 한편 負商, 褓商은 각기 독특한 組織을 가진 商人組合, 行商組合을 형성하여 六矣廛과 더불어 朝鮮 商業史에 있어 都市와 地方商業의 代表的 存在였다.[4]

褓負商의 服裝 其他 몸차림의 制度에 있어 特異한 점은 龍을 그린 勿尾杖을 짚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발감개(버선대신 발에 감는 무명 감발)를 한 輕便한 차림으로 木花송이를 左右 양

---

1) 韓國總覽, p. 863.

2) 萬機要覽, 財用編, 各廛참조, 六矣廛의 取扱商品 : 綿布廛—唐津木, 海南木, 高陽木, 江나이, 商賈木, 軍布木, 貢物木, 巫女布, 天銀(純銀), 丁銀(품질이 낮은 銀), 西洋木, 西洋紬등.
- 紙廛—白紙, 壯紙, 大好紙, 雪花紙, 竹靑紙, 霜花紙, 花紋紙, 初塗紙, 上疏紙, 분당지, 宮箋紙, 詩軸紙 菱花紙등.
- 市廛—農布, 細布, 中山布, 咸興五升布, 安東布, 黃苧布(계추리), 海南布, 倭布, 唐布, 생계추리, 門布 造布, 永春布, 吉州明川등
- 靑布廛—中國產貨物, 中針, 細針, 다홍삼승, 靑삼승, 錄氈, 紅氈, 紛紅氈, 三升膏藥, 貢緞膏藥, 감토모자, 回回布, 閩薑砂糖, 五花糖, 軟環糖, 王春糖등
- 綵廛—六矣廛의 首廛으로 주로 貢緞, 大緞, 紗緞, 宮緞, 生絹, 雪寒綃, 雲紋大緞, 日光緞, 月光緞, 가계주, 龍紋甲紗, 相恩緞, 通海緞, 羽緞, 皓老緞, 金線緞, 八兩紬, 雙紋綃, 葡萄大緞등 富商大賈인 市井들의 豪奢가 극진하였다.
- 魚物廛—北魚, 貫目, 骨獨魚, 民魚, 石魚, 通大口, 廣魚, 文魚, 가오리, 全鰒, 海蔘, 가자미, 昆布, 미역, 다시마, 김, 파래, 우뭇가시리등

3) 漢陽歌, 한산거사作 참조

4) 한국문화사 대계 Ⅱ. 사회·경제편, p. 1122~1123.

편에 단 패랭이를 썼다.[5] 이 木花송이는 醫治用, 軍器用을 겸한 笠飾으로 호사인 듯 보기좋게 달고 다녔다.

2. 客主(旅閣)

주로 委託賣買業의 商人으로 商品流通 過程에 있어 最上部에 속하며 生產者, 商賈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中間商人으로 本業은 委託賣買이나 그외에 顧客의 主人으로 萬船의 便利를 도모하고 있어 고객을 위한 旅舘, 倉庫, 運送, 金融, 仲介등의 業務를 行함으로 外國의 委託賣買와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6]

3. 居 間

居間은 商賈나 客主등 各種 商人, 一般 全衆을 위하여 中間에 介在하여 便利를 도모하여 주는 補助商을 말한다. 現行商法으로는 仲介人에 해당되지만 業務內容과 活動方法에 따라 다양하다. 內居間, 外居間, 同事居間, 勞力居間, 唐貨居間, 換錢居間, 家儈, 福德房등의 類型이 있으며 現在까지 殘有한 居間의 名稱으로 특유한 것은 '福德房'이라고 할 것이다.[7] 居間은 仲介人으로서 商去來는 물론 各種 交涉에 반드시 중개자를 필요로 하는 朝鮮社會의 특수한 존재였는데 더우기 商去來에, 불가결의 존재로서 상품유통과정에 保證을 확실히 하여 기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客主도 처음 營業을 열자면 제일 먼저 居間의 선택에 마음을 써야 했으니 이는 客主가 현명하고 신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안심하고 貨物賣買를 委託시키게 하는 것이 오로지 居間의 힘이었기 때문이다.[8]

4. 典當舖

「朝鮮 在來의 상업은 主로 口錢業과 貸金業이다. 그리고 貸金業은 典當業이다.」[9] 朝鮮末期에 와서 典當舖 規則이 法規化하여 한국인은 물론 日本에서 온 居留民에 의해 典當舖가 盛行되었다. 典當舖의 이율이 年 1할 2푼 내지 6할의 高率로 公認되었고 실제적으로는 10할 내지 12할의 상당한 高利로 流典期間이 지나면 土地, 家屋, 기타 典物은 가차없이 典當舖로 흘러가 결국 生活의 근거를 완전히 상실하기도 하였다.

Ⅲ. 寫眞을 通해 본 開化期의 商人服裝

〈사진 1〉 藥令市場(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商人과 洋服 코우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고객

5) 柳子厚의 「褓負商攷」에 의하면 高麗末 李成桂가 太祖로 등극하기 전 出征을 하여 阿只拔都와 더불어 交戰中 諸軍을 指揮하다가 流矢에 左脚을 傷하여 流血이 甚하였다. 倉卒間에 治療할 길이 없었는데 마침 從軍하였던 白達元의 部下中 綿花商이 있어 그가 가지고 있던 綿花로 붕대하여 응급치료를 할수 있었다. 그를 기념하여 후에 朝鮮王朝 李太祖가 된 李成桂는 褓負商이 쓰는 패랭이의 左便에 목화송이를 달게하였다 한다. 그후 丙子亂에 仁祖가 南漢山城 피난시 負傷으로 인한 流血을, 마침 褓負商중의 솜장수가 있어 그가 가지고 있던 솜으로 붕대를 해드렸으므로 平亂後 仁祖는 綿商의 忠誠을 가상히 여겨 太祖를 想起하며 패랭이 右便에 하나를 더 달라는 御命을 내려 이에따라 패랭이 左右에 솜송이가 달리게 되었다. 또한 宣祖에 歸化人 金忠善의 始造로 鳥銃이 생긴 後 이 銃을 사용하는데 火藥에 솜이 합쳐야 되는 고로 이때부터 보부상의 平涼子에 목화송이를 한편만 달고 다른 편에는 發彈할 綿片을 두루말아 달다가 후에 양편에 모두 발탄할 綿卷을 보기좋게 달고 다녔다.

6) 負褓商, 韓國硏究叢書, 16輯, p. 19~20.

7) 朝鮮人の商業, 조선총독부조사자료, 11輯, p. 67.

8) 負褓商, 韓國硏究叢書, 16輯, p. 22.

9) 朝鮮人の商業, 조선총독부조사자료, 11輯, p. 118.

〈사진 2〉 유기점(한국 민속 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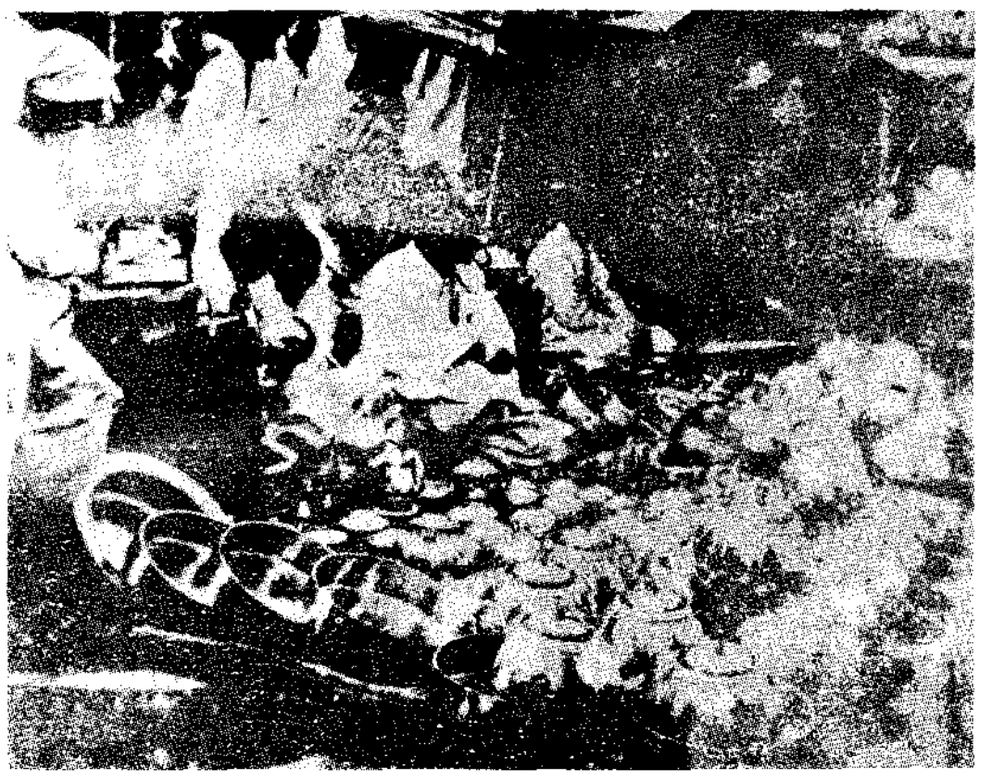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다.

〈사진 3〉 유기점(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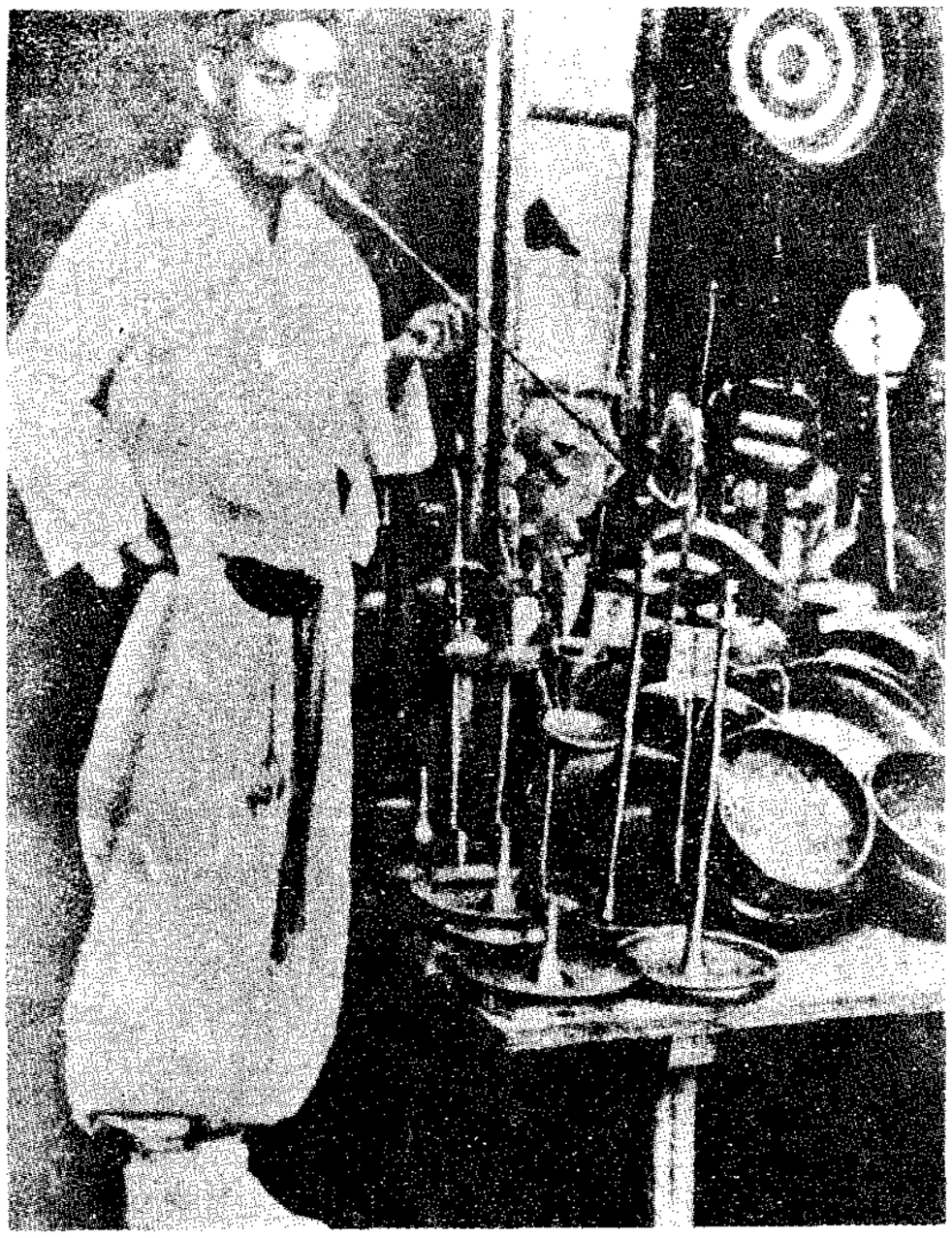

바지, 저고리를 입고, 버선을 신고, 맨상투 차림이다.

〈사진 4〉 米穀市場(平南용강포)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바지, 저고리를 입고, 밀짚모자를 썼으며, 머리를 땋아 내린 少年은 바지, 저고리, 조끼를 입었으며, 그 앞의 인물은 바지, 저고리, 조끼에 洋帽를 착용했다.

〈사진 5〉 싸전(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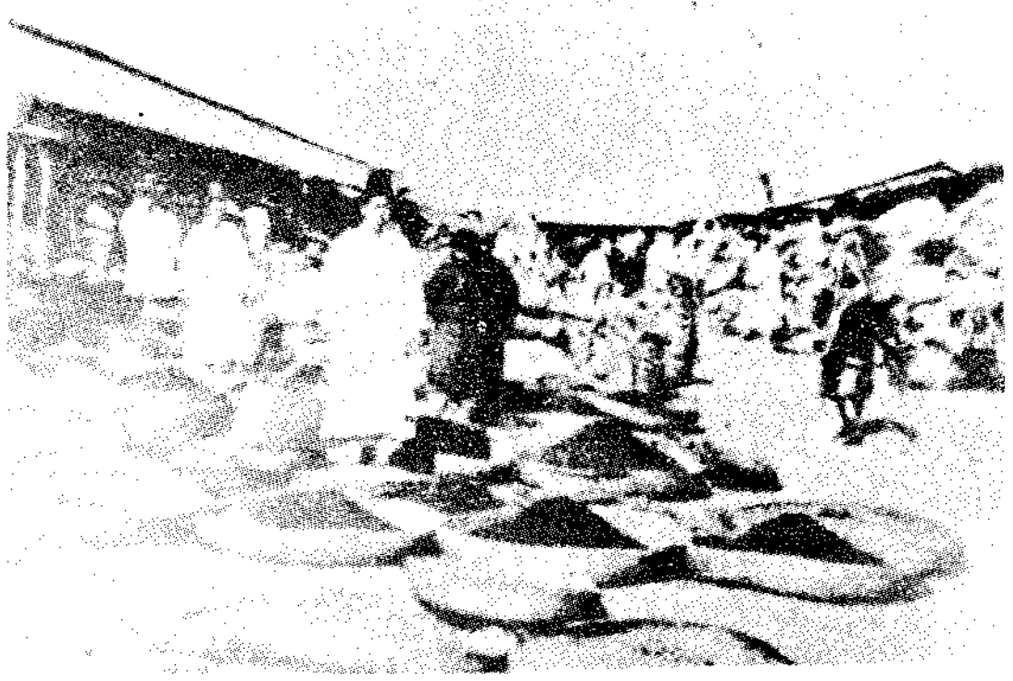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사진 6〉 雜貨店(종로거리의 상가)
(한국 민속 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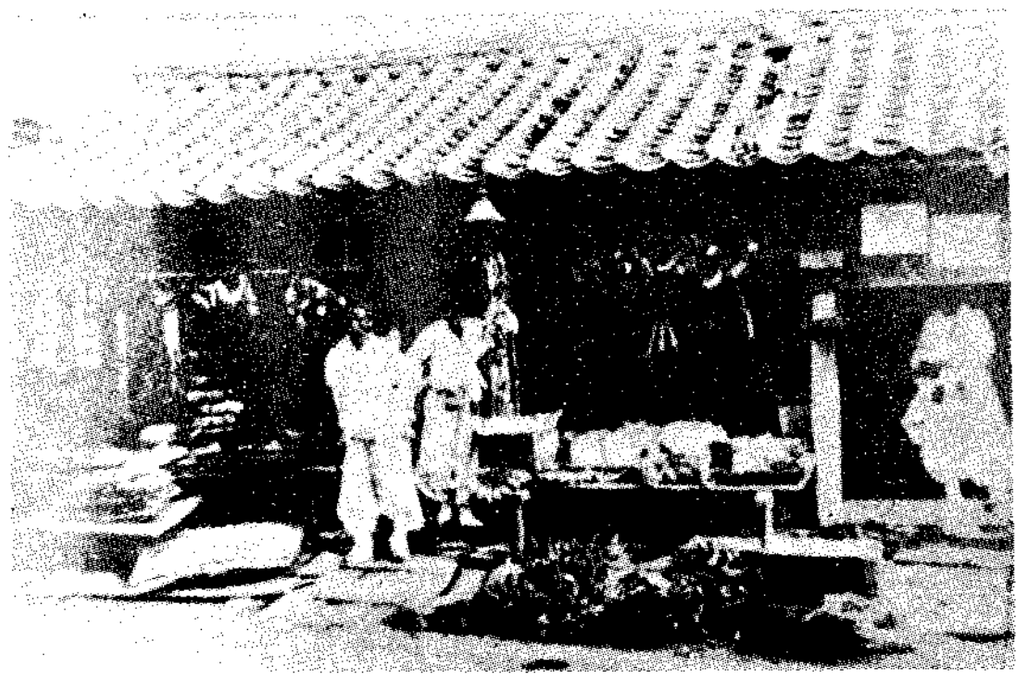

맨 상투 머리에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다.

〈사진 7〉 雜貨店(한국 민속 백년)

宕巾을 쓰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다.

〈사진 8〉 포목전(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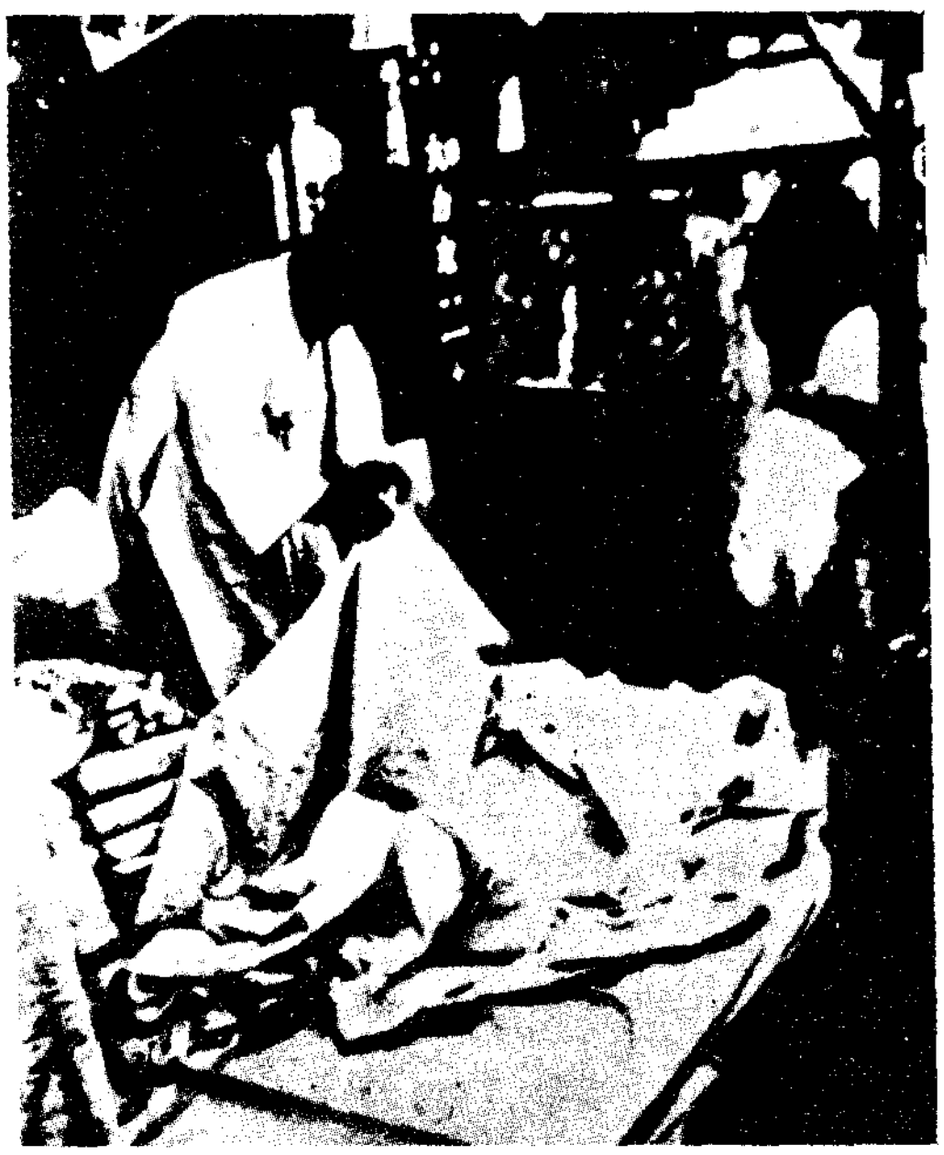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사진 9〉 나무시장(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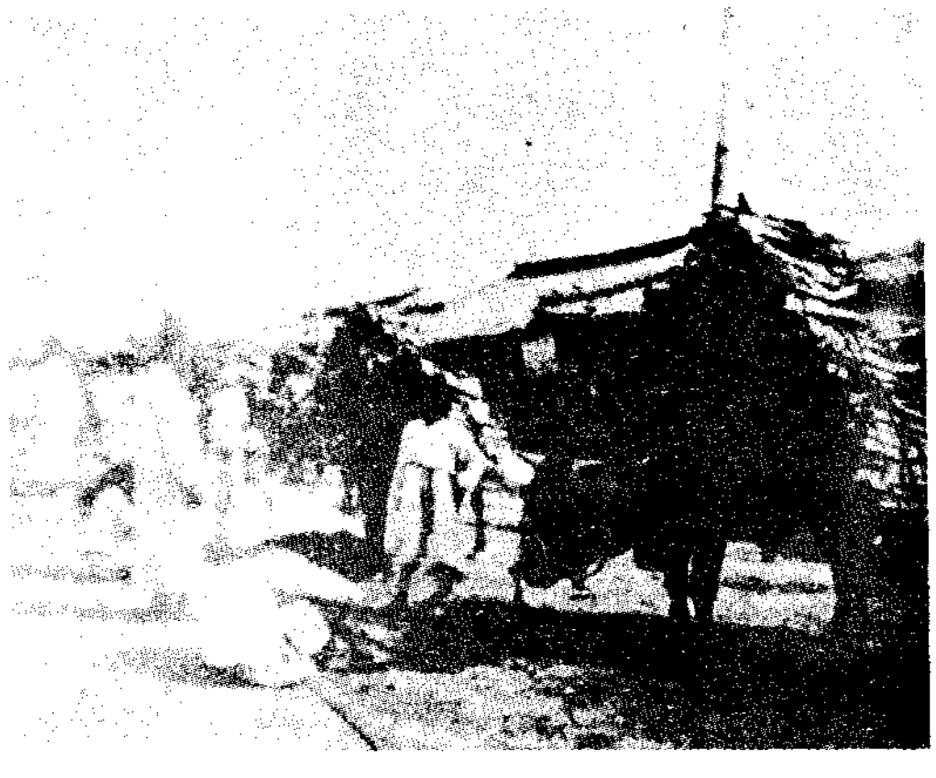

삿갓을 쓰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고객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다.

〈사진 10〉 쇠장(水原시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소장수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매었으며, 고객은 파나마 帽에 양복을 입고 洋靴를 신었다.

〈사진 11〉 갓房(First Ecoun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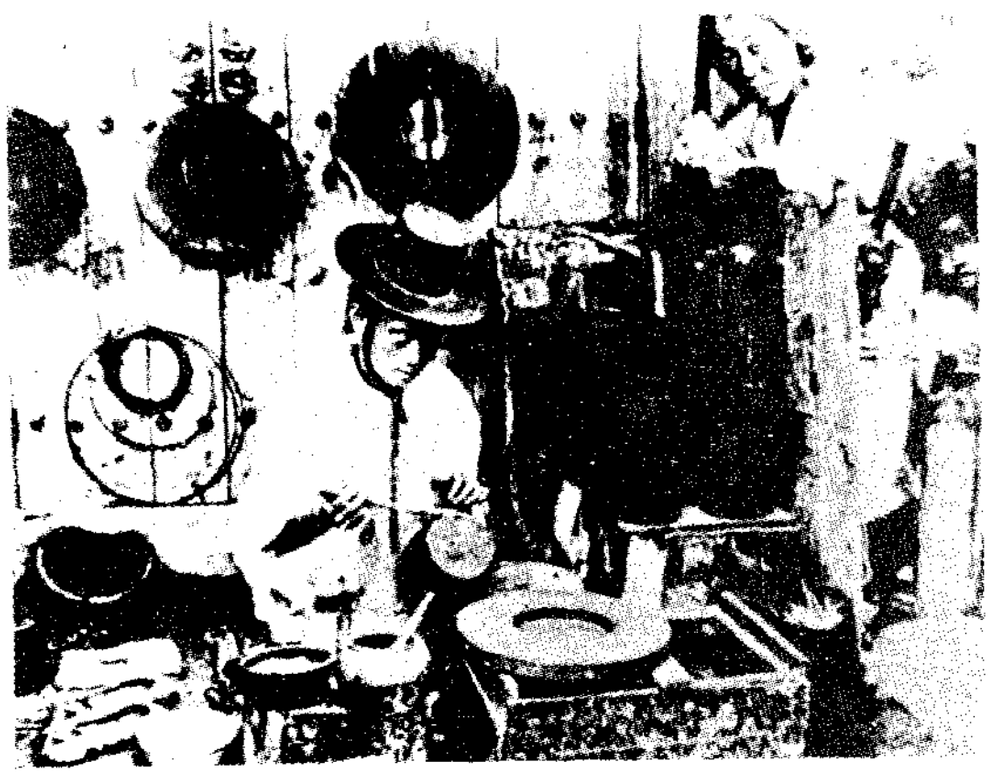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다.

〈사진 12〉 난전(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짚신장수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갓을 쓰고

있다.

〈사진 13〉 짚신장수(한국 민속 백년)

두루마기를 입고, 짚신을 신고, 머리에 수건을 둘렀다.

〈사진 14〉 신발뗌쟁이(한국 민속 백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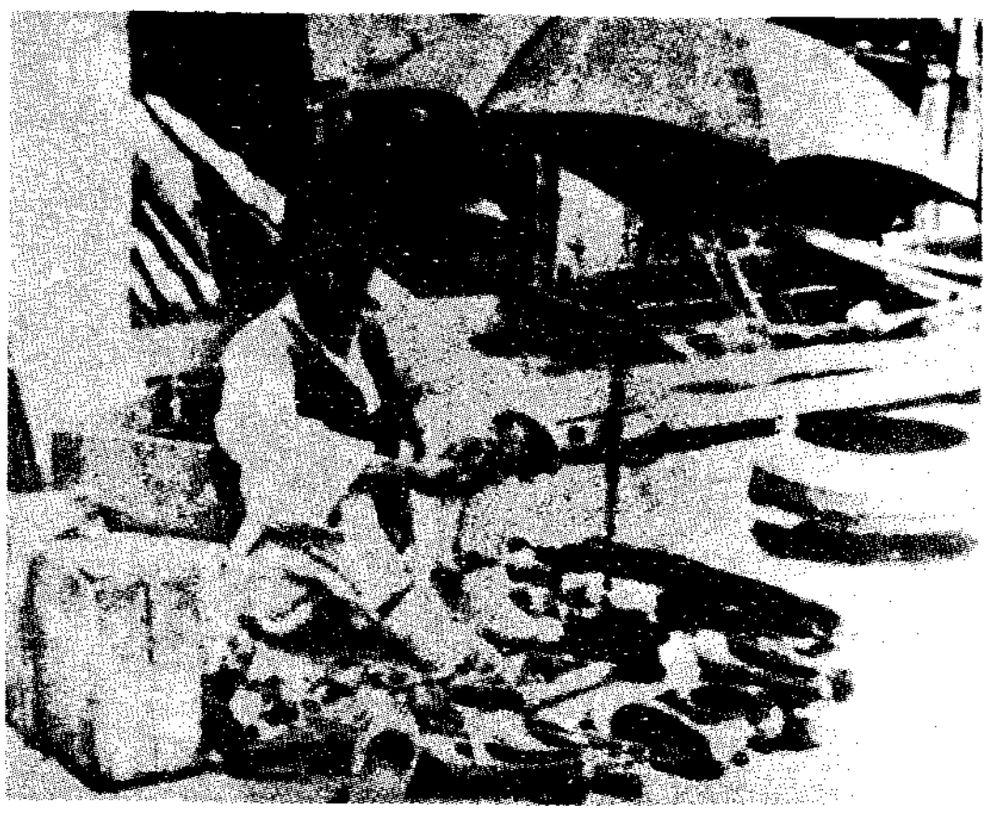

탕건을 쓰고 바지, 저고리, 조끼를 입었다.

〈사진 15〉 어물전(한국 민속 백년)

맨 상투차림과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다.

〈사진 16〉 방물장수와 신발전

(First Ecounters)

고무신 장수는 방한용 솜 저고리에 털모자를 쓰고, 방물장수는 목도리를 두르고 털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양말을 신고 있다.

〈사진 17〉 방망이, 홍두깨장수

(First Ecounters)

두루마기를 입고 남바위 위에 갓을 쓰고 있다

〈사진 18〉 등거리 장수(한국 민속 백년)

적삼, 바지를 입고, 고무신을 신었으며 중절모를 쓰고 있다.

〈사진 19〉 옹기장수(한국 민속 백년)

적삼, 바지를 입고 수건을 둘렀으며, 다른 이는 宕巾을 썼다.

〈사진 20〉 엿장수(First Ecounters)

바지, 저고리를 입고 삿갓을 썼으며, 다른 少年은 땋은 머리를 했다.

〈사진 21〉 닭장수(First Ecounters)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다.

〈사진 22〉 맷돌장수(First Ecounters)

바지, 저고리를 입고 갓을 썼다.

〈사진 23〉 소반장수(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바지, 저고리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밀짚모자를 썼다.

1. 方 笠

方笠은 上古時代의 幘, 折風과 같이 우리冠帽의 기본형태의 하나이며 옛날의 暑氣와 雨雪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발생, 社會的 意義를 갖는 冠帽로는 未發達의 것으로, 羅濟笠이라 칭하며 新羅, 百濟時代에는 일반인이 모두 常用하였고, 高麗時代에는 일부 官人, 胥吏間에 통용 官黑吏白의 구별이 있었으며, 朝鮮朝에는 胥吏階級만 착용하였으나 壬辰亂後 胥吏階層도 이를 피하고 쓰지 않게 되어 光海君 6年 忠淸監司의 狀啓로 各道의 鄕吏로 하여금 法典에 의해 제정하였으나[10] 이행되지 않았으며 國末에는 草笠을 썼으며, 마침내 方笠은 罪人視되는 喪人의 쓰개로 되었다. 방립은 삿갓이 원형으로 原料, 型製의 진보를 나타낸 것으로 겉은 가늘게 오린 댓가비 안은 왕골 속으로 삿갓같이 만들어 笠簷의 가장자리를 四花瓣形으로 한다.

2. 平凉子

遮陽子, 蔽陽子로 俗稱 패랭이라 한다. 이것은 일반사람이 통용하던 것이었으나 다른 冠帽의 출현으로 後에는 良人은 喪人이 三年喪服期를 지내고 禫祭만 남은 기간에, 혹 喪人이 遠行하는 경우 그 편리를 취하여 方笠代用으로 착용하였으며, 庶民은 驛卒, 褓負商, 賤業人이 常着하였다. 일반적으로 素色 그대로 썼고 驛卒은 黑漆을 하였고, 褓負商은 양편에 木花송이를 달

10) 「經國大典」, 禮典, 儀章, 鄕吏服制

	〔冠〕	〔服〕	〔帶〕	〔笏〕	〔靴鞋〕
公服	幞頭	綠袍	黑角帶	木	黑皮靴祭服同
常服	黑竹方笠	直領	條兒		黑皮靴

았다. 李裕元의 「林下筆記」에 의하면 「우리나라 民庶는 옛날에 모두 平凉子를 썼는데 이것은 竹纖로 만들었으며 素笠이었고 驛卒만은 黑笠으로 하여 썼다. 俗에 兩班이라 하여 黑色으로 하였음은 民庶가 쓴 것이 色素하기 때문이다. 壬辰亂에 倭兵들이 兩班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 없앴으므로 한때 大小人員이 모두 平凉子를 썼다」[11] 이는 한때의 平凉子의 착용범위를 말해주고있다. 宣朝때 平凉子대신 中國制 小帽子로 庶人帽를 개혁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平凉子는 여전히 庶人帽로 쓰여졌다. 尹國馨의 「甲辰漫錄」에 의하면 「中國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帽子(俗謂감투)를 쓰지 않고 笠子를 쓰는 것을 비웃었는데 난리후에 朝庭에서 누차 令을 내려 갓을 벗고 帽을 쓰도록 外方에 場市이 서는 날이면 官人, 驛卒들이 官禁을 빙자하고 함부로 빼앗았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아 始終 6,7年 끝내 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이 금지는 다만 下賤한 무리에게만 하고 兩班에게는 하지 않음이 따르지 않음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 間或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나 서울 사람은 網巾을 쓰고 帽를 그 위에 또 조의를 입으나 시골사람들은 網巾을 쓰지 않고 조포로 조잡하게 모자모양을 만들어 쓰고 또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으니 남루한 모양은 오히려 平凉子를 씀만 못하니 다른 사람과 서로 상대함에 부끄러워 하고 우습기도 하다. 더러는 상투머리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탈옥하였느니 혹은 도적이니 하여 비웃으니 이러한데 어찌 명령에 쫓을 理가 있을까?」[12]

3. 草笠

草笠은 平凉子에서 黑笠으로 옮겨지는 笠制發達단계의 것으로 形이 平凉子 비슷하며 材料, 製法에서 발전하였고 양태가 위로 약간 버드러져 올라갔다. 太祖 6年 3月條에 「좌정승 趙浚에게 草笠과 玉纓子를 내게주고 奉化伯 鄭道傳과 宜城君南誾에려 草笠을 내려주다」[13] 하였고, 太宗 17年 12月條 禮曹와 儀禮詳定所에서 의논하기를 「무릇 대소 관리가 朝路에서 비와 눈이 오는 날이 아닌데 갓을 쓰는 것이 실로 미련하니, 빌건데, 중국제도에 의하여 삼군갑사를 제외하고 東西 文武 관리와 前銜 관직이 있는 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항상 사모를 써서 朝庭의 威儀를 엄숙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과단하소서」[14] 하였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士族의 草笠은 50竹이고 庶人의 草笠은 30竹으로 제한하였다」[15] 이와같이 朝鮮王朝 初期에는 織縷의 精粗差로서만 차등을 두었고, 士庶人의 구별없이 草笠의 착용이 일반화 되었으나, 李濟臣의 「淸江先生鯸鯖瑣語」에 보면 「대개 中古 우리나라 士人들이 평시에는 항상 淡黃色 草笠을 썼는데, 마치 지금의 上殿別監의 奴子 및 司僕寺 馬夫들이 쓰는 것과 같은 것을 썼기에 그뒤에 선비들이 쓰는 초립은 흰 것을 변경하여 검은 것으로 하였고, 담사 이전의 초립 또한 따라서 검어졌다. 흰 베로 싼 갓은 비록 국상에 있어서도 썼다」[16] 이와같이 草笠은 黑笠이 생겨남에 따라 平凉子와 함께 庶民의 쓰개가 되었으며, 國末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11) 李裕元, 林下筆記, 卷十七, 文獻指掌篇 참조

12)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Ⅲ, 孫敬子, 金英淑, p. 197 번역참조
「中原人譏我人不着帽子俗所謂黿頭 而着笠子 亂後朝庭屢屢下令 去笠着帽 至於外方場市 則官人驛卒 憑藉官禁 恣行攘奪 亦不從令 首尾六七年 終不得禁 甚矣 習俗之難變也如此 況此一禁只加於下賤 而兩班則無禁 其不從也亦宜矣 間或有從令者 而京人則着網巾加帽 又穿皂衣 猶之可也 野人則不着網巾 以皂一布粗作帽樣而着之 且穿百結衣 藍縷之狀反不如戴平凉子 而與人相對 且愧且笑 或有露髻行走者 則或以越獄 或以盜兵譏之 如此而其有從令之理乎」(卷之五十五, 甲辰漫錄)

13)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Ⅰ, p. 44 번역참조
「賜左政丞趙浚 草笠及玉纓子 賜奉化伯鄭道傳宜城君南誾草笠」

14)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Ⅰ, p. 97 번역참조
「凡大小官吏 於朝路 非雨雪日而着笠 實爲未便 乞依華制 除三軍甲士外東西文武官吏及前銜有官守者 非雨雪日則常着紗帽 以肅朝儀 違者科斷」

15) 經國大典, 禮典, 雜令참조
「士族草笠五十竹又馬尾笠付竹笠 庶人草笠三十竹又竹織笠繩結笠」

16) 韓國服飾史資料選集, p. 200번역참조
「盖中古我國士人 平時常着淡黃白草笠 若今之上殿別監奴子 及司僕寺一率馬夫等 所着者故也 其後士類所着草笠 變白爲黑 而禪前之笠亦從而矣 白布裹笠 則雖國恤着之」(卷之五十七)

4. 黑笠

黑笠은 갓이라 일컬으며 平凉婦, 草笠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정립된 朝鮮王朝 笠制의 定制로 班人階層의 冠帽였었다. 이는 가늘게 쪼갠 댓가비로 양태 대우를 엮고, 그 위에 布, 絲, 馬鬣, 牛尾등을 넣어 싸고 검은 옻칠을 한 것으로 漆笠 또는 平笠이라고도 하였다. 그 笠頂을 〈대우〉, 또는 〈帽子〉, 笠簷을 〈양〉, 또는 〈凉太〉라 하며 대우, 양태를싸는 布, 絲, 毛를 〈싸기〉라 하며 이의 차별에 따라 貴賤, 上下의 등급이 있었다. 말총으로 만든 馬尾笠, 豚毛로 만든 猪毛笠, 대를 가늘게 쪼개어 만든 竹絲笠(또는 眞絲笠이라 일컬음), 竹絲笠 위에 羅, 紬를 입힌 布笠, 豚毛와 竹을 섞어 만든 竹猪毛笠, 대우는 鬣로 하고 양태는 布로 싼 陰陽笠등이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변천이 많았다.[17] 또한 帽의 高低, 簷의 廣狹등 유행에 따라 여러 변화가 있어 國初에는 高頂笠, 中期에는 廣簷笠의 형태로 한때는 對座床을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도 했으며, 後期까지 그대로 착용되어 왔으나 高宗代 大院君의 집권後 양태가 좁은 小笠으로 개량함으로서 오늘날에 볼 수있는 갓의 형태로 되었으며, 또한 班人階層에서만 着用할 수 있던 것을 上下, 貴賤없이 모두 착용하게 허락하여[18], 그後 黑笠, 즉 갓은 國帽가 되었다.

5. 耳掩

耳掩은 中國으로부터 世宗代에 건너야 西洋에서 다른 煖帽가 들어 오기까지, 上下, 貴賤 구별없이 國末까지 着用된 禦寒帽이다.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煖耳制度가 公私, 貴賤, 文武에 따라 각기 그 모양을 달리했고, 私家에서도 보통으로 착용했으며 貴賤, 文武를 따질 것 없이 揮項, 胡耳掩, 風遮의 制가 있었는데 혹 털로, 혹은 黑緞, 褐布를 겹으로 하여 만들어 썼다. 武臣은 公服에다 滿縚頭里를 착용하였는데 그 제도는 털로 된 목도리의 앞, 뒤, 바깥쪽을 貂皮로써 선을 둘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지은 것이다. 나이 많은 朝士가 闕內를 출입할 때는 작은 風遮를 착용하였으니 그 이름을 項風遮, 혹은 三山巾이라고 하였다. 文官, 蔭官, 武官의 公服 帽帶에는 十月 初하루에서 다음해 正月 末日에 이르기까지 紗帽에 煖帽를 썼는데 堂上官일 경우 貂皮를 사용하고 堂下官은 鼠皮로 하였다. 俗名 耳掩이란 겉은 털이고 안은 명주이며 둘레가 매우 크고 뒤로 드리워진 꼬리가 몹시 이상하게 생겼지만 항상 着用하여 풍속이 되어 버렸으므로 그것을 이상히 생각지 않았다」[19]라 하였다. 成宗 三年 正月, 奢侈 禁制禁止節目에 「庶人의 남자와 부인이 貂皮, 靑鼠皮를 사용하여 옷을 만들거나 耳掩을 한 자는 아울러 금단하라」[20] 하였고, 明宗 8年 9月條에 憲府에서 아뢰기를 「笠子를 쓸 때에 耳掩을 堂下官 및 士族은 鼠皮와 日本産 山撻皮로 만들어 쓰고 諸學의 官員과 諸色 군사, 庶孼, 吏胥는 靑狐皮와 국산 산달피로 만들어 쓰고, 工商, 賤隷는 山羊皮, 狗皮, 猫皮, 地撻皮, 狸皮, 兎皮등으로 만들어 쓰게 하고, 천한 여인의 毛冠과 遮首도 또한 商工人과 賤隷의 예를 따르게 하소서」[21] 하였다. 이같이 耳掩은 貴賤없이 모두 겨울용 煖帽로 着用하였고, 國末에 일반적

---

17) 한국복식사연구. 유희경, p. 355 참조

18) 高宗實錄, 31年 6月條 참조
「朝官衣制 陛見衣服 紗帽章服 盤領窄袖品帶靴子 燕居私服 漆笠搭護絲帶 士庶人衣制漆笠周衣絲帶」

19)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Ⅲ, p. 459 번역참조
「而我凍煖耳之制 有公私貴賤文武所着自別 私家常着 毋論貴賤文武有揮項一胡耳掩風遮之制 或毛或袂衣以黑緞褐布 武臣則公服 用滸縚頭里 其制毛一揮項之前後外沿 周以貂尾爲縚 故名 朝士之年老者出闕內 用小風遮或名項風遮或名三山巾 文蔭武公服帽帶 則自十月初吉 至正月晦日 紗帽一冒暖帽 堂上用貂 堂下用鼠 俗名耳掩 其狀外毛內紬 團圓甚巨 後垂尾甚怪 而常着成俗 故不以爲怪」(五洲衍文長箋散稿, 煖耳附袷護項煖帽辯證說)

20) 成宗實錄 3年 1月條 참조
「庶人男婦用貂皮靑鼠皮爲衣爲耳掩者 並禁之」

21) 明宗實錄, 8年, 9月條 참조
「憲府啓曰 著笠時耳掩披肩堂下官及士族則用鼠皮倭山獺皮諸學官員醫學律學之類諸包軍士庶孼吏胥則用赤狐皮鄕山獺皮工商賤隷則用山羊皮一狗皮猫皮地獺皮狸皮兎皮等 賤女人毛冠遮首 亦依商工賤隷之例」

으로 남바위 풍뎅이라 불리운 揮項(護項)은 귀·목덜미를 덮어 꽤 오랫동안 村老들이 사용하였으며 외출시에 남바위 위에 깃을 쓰고 다니기도 하였다.

6. 洋帽

國末 斷髮令과 아울러 網巾의 사용이 폐지되고 머리치장이 달라짐에 따라 冠帽의 변화를 가져왔다. 상투없는 고리에 網巾이 소용없음에 宕巾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썼으며 간편히 宕巾을 常用하고 있었다. 韓服을 입고 外出하는 이들 중 좀더 開化한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洋服帽子를 씀으로 한복에 洋帽가 정착화 되었다. 1919年 1月 高宗이 승하하자 온 국민들은 옛 法度대로 3個月을 國喪期間으로 定하였으나 옛법대로 하자면 國喪期間에는 모두 白笠을 써야 하므로, 상투가 없어짐에 따라 갓 만드는 갓방도 차츰 없어져 버려 드물었으므로 맨 머리로 國喪에 참여할 수는 없는지라 白笠 비슷한 파나마帽子, 麥藁모자, 中折帽를 착안함에 이르렀으며, 사용에 가볍고 편리하며 멋이 있는 이 모자들은 國喪이 끝난 후에도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일대 유행을 보게 되어[22] 한복에 정착화가 되었다.

7. 두루마기

周衣의 通稱이며 兩脇下에 무가 없이 道袍의 着用이 허락되지 않는 常民階級에서는 창옷, 두루마기를 웃옷으로 입었던 것이다. 중치막이라 두루마기는 兩班階級에서는 平居時, 庶民階級에서는 外出時 웃옷으로 입었으나 高宗 甲申年, 衣服制度의 변혁으로 넓은 소매와 너털거리는 자락있는 袍가 廢止되고 홀가분한 두루마기가 밑받침 옷으로부터 웃옷으로 나오게 되고 그後 약간의 沿革이 있다가 甲午更張이후 확 퍼져서 누구나 다 입는 웃옷이 되었다. 이는 四季를 通하여 반드시 衣冠을 整齊키 위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꼭 입고 외출을 하였으나 韓日合併後에는 엄격히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 오늘날에도 한복의 外衣로서 通用되고 있다.

8. 바지, 저고리, 조끼, 포시

저고리는 三國時代의 古墳壁畵에서 보듯이 直垂型의 긴 저고리에, 띠를 매다가 옷고름으로 변한 형태로 男子의 저고리는 女子의 저고리 처럼 길이의 변화가 심하지는 않았으며 조선末期의 저고리 형태가 開化期 이후에도 그대로 襲用되어 왔다.

적삼은 주로 여름용 간이복으로 庶民層의 웃옷이었으나 우리옷에 洋服에서 착안하여 변형된 조끼가 도입됨에 따라 조끼의 실용적이고 편의적인 호주머니를 곁들여 여름용 통상복으로 사용되었다.

조끼는 우리 한복에는 전혀 없던 형태로 洋服의 도입 이후 양복조끼를 본따 만들어 입은 것으로 개화기이후 나타난 洋服의 韓服化한 便服으로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다.

바지는 大口袴·窮袴가 있었으나 그 기본형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庶民層에서는 大口袴보다 活動에 간편하고 옷감도 절약되는 窮袴를 많이 입었으며 발목을 잡아매는「다님」을 매었으며, 行纏을 쳤다.「四禮便覽」에 의하면「속칭 행전이다. 면포를 사용하여 만들며, 길이는 3尺 남짓하고 넓이는 3寸 남짓하다. 포백척으로 한 머리에 끈이 둘이 있는데 정강이에서 무릎까지 묶고 전을 바지 가랑이를 둘러 맨다」[23]라 하였고,「芝峯類說」에 의하면「평시에 유생의 기마는 금지하였다. 그런고로 유생은 짚신을 신고 도보로 다녔으며 말을 타고 다니는 자는 드물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목이 긴 가죽신을 신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조관의 모양과 꼭 같으며 도보로 걸어 다니는 자는 아주 없어졌다. 또 평시에는 비록 연장자 일지라도 행전을 치고 직령의를 입었는데, 지금은 나이 젊은 자들도 다 도포를 입고 행전을 벗어 버린 채 분투를 입는다. 비록 자제들이 어른에게 뵐 때라도 그러한 차림을 한다. 풍습을 이루어 그것이 떳떳한 것으로 되었으니 시속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4]라 하였다. 이와같이 行纏은 步行에 편하

---

22) 한국복식사연구. p. 630.

23) 四禮便覽, 卷之一, 冠禮, 序立
「勒帛俗稱(行纏) 用綿巾爲乞 長三尺許 廣三寸許(布帛尺) 一頭有二繫 束脛至膝纏繞袴管

24) 韓國服飾史資料選集Ⅲ, p. 305, 번역참조
「平時儒生騎馬有禁 故儒生穿履徒步 罕有騎行 今則着靴跨馬一似朝官模樣 絕無徒行者 且平時 雖長者 着行纏

도록 통으로 하여 무릎 아래서 묶고 신 위까지 내려 오도록 한 것으로 脚絆과 같은 용도의 것이나 交通의 便이 생기며 필요성이 줄어들자 소멸되어 갔으며 차츰 활동에 간편한 양복 바지의 편리함을 취하였다.

9. 토시 履

토시는 「雅言覺非」에 보면 「투수를 토수라 말하는 것으로 중국음이 잘못 옮겨진 것이다」[25] 겨울, 여름用이 있으며 겨울용은 防寒具의 일종으로 비단, 무명교직으로 말들거나 안에 털을 대어 끼었고, 여름용은 등나무·말총으로 성기게 엮어 말들어 끼어 저고리 수구에 땀이 묻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게 사용되던 것이나 西洋으로부터 셔츠, 장갑이 들어옴에 따라 차츰 용도 가치를 잃게 되어 사라져 갔다.

신은 黑皮鞋·鹿皮鞋·挾金鞋·太史鞋·木鞋·布鞋·各種 草履·진신·나막신등이 있다. 皮鞋에 대하여는 奢侈風潮를 누르고 身分의확립을 위하여 歷朝에서 자주 禁令을 내렸다. 世宗 11年 2月에 「서민·공인·상인·천인·하례는 斜皮로 말든 靴·鞋를 禁한다」 하였고, 同王 28年 5月 31年 正月에도 禁止令을 내렸으나 皮鞋의 사용은 여전하여 마침내 같은 가죽이로되 材料로서 貴賤의 구별을 두어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貴者는 鹿皮를 사용하고 賤者는 牛皮를 사용하였다」라 하였다. 草·麻制는 주로 履이며 草履·鹿鞋(履)로 구분된다. 草履는 등칭 짚신으로 왕골짚신·부들짚신·고은짚신·엄짚신등이 있으며 이것은 皮革製·布帛製등의 靴·鞋가 발달하며 賤視되어 차차 吏隷下賤人의 신이 되었고 庶民層 男女가 일반적으로 共用하였으나 그 精製品은 士大夫階級에서 便服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甲午更張이후 文武官服의 洋服化로 黑皮鞋·鹿皮鞋·挾金鞋·木靴등이 필요치 않게 되고 洋靴로 바뀌자, 각종 갖신, 짚신, 진신, 나막신등이 일반화 되었다. 한때는 混織草鞋가 유행되어 황짚과 왕골로 곱게 삼은 미투리는 개화기에 男子用 신발중 일등품이었으며, 각종 재료에다 色문양을 넣어 삼은 짚신은 女子用 신발중 일등품으로 인기를 모아 이를 개화미투리, 개화짚신이라 일컬었다. 이에 1920年代부터 고무신이 나오게 되니 한복에 洋靴는 신지 않고 우리 고유의 신모양을 본따 만든 고무신이 값싸고 경제적으로 갖신, 짚신, 진신, 나막신을 대신하였다.

버선은 양말이 들어와서도 나이든 이들은 꼭 착용하였으나 차츰 양말을 혼용하게 되었으며 한복에는 반드시 양말을 신었다.

Ⅳ. 結 論

以上을 通해 본 결과 開化期의 商人服裝은 우리 固有服裝인 바지, 저고리 차림이 그 主이며 난전과 등짐장수등 허드레 물건을 취급하는 商人은 맨 상투에 바지, 저고리 차림이며, 옷감, 갓, 유기등을 취급하는 고급상점의 상인은 갓을 반드시 쓰고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의복형태는 개화기를 통하여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객의 경우에는 양복 착용자가 꽤 눈에 뜨이고 있다. 그후 차츰 西洋式의 帽子·양말·신등의 부속품의 경우에 착용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洋服은 한복속에 부분적으로 절충되어 자연스레 입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의 존속과 더불어 내려온 신분계급 제도에 따라 良人階級에 속하는 商人의 위치는 개화기의 社會制度의 개편에 따라 近代資本主義의 물결을 타며 많이 향상되었고 새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쉬운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衣服은 전통적인 庶民服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부속품의 부분적인 洋服化를 보이고 있음은 傳統을 지키고자 하는 보수성과 새로운 물결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진보의식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의복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穿直領衣 今則少者皆道袍至行纏穿分套 雖子弟見長者亦然習以爲常 則可見時俗之變矣」
(卷三, 君道部, 法禁)

25) 雅言覺非, 卷之二,
「套袖 謂之吐手者 華音之誤翻也」

Abstract

A Study on the Merchant's Costume in Enlightment Period of Korea

by Nam Yunsuk, Chŏn Hyesuk

A costume study is a part of the cultural history and also has the greatest relation to life's senses as a concrete culture.

Korean costume that consists a double structure with Chinese one through Chosun Dynasty five hundred years, has recently changed up to the Western Form.

In this respect Korean Costume has a important meaning in relation to Western costume. Traditional costume, generally speaking, has tendency to keep up by the common people than the higher classes. Then there were four classes. They are aristocratic classes common people,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form, industry, trade and low classes.

Merchant of them partially took charge of the cultural exchange about contacting with tradition and new one.

Because it's easy to flow in one's character the new civilization.

So there is an important significance to research of the merchant's costume in Gae Hwa Gi changing age of civilization in politics, ecónomic, and social system.

The records appeared about the merchant's costume in the age of civilization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natural photo at that time.

〈韓國服飾學會, **服飾**, 第 8 號, **1984. 12**〉